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서울남부지방검찰청

전문공보관 최성국

전화 02-3219-4420 / 팩스 02-3219-2397

보도자료
2021. 9. 13.(월)

제 목

증권사 직원과 결탁한 무자본 M&A 사범 수사 결과

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 등(제11조 제1항)

- 서울남부지방검찰청(금융조사제2부 부장검사 김락현)은 증권사 직원과 결탁하여 코스닥 상장사 A사를 무자본 M&A한 자본시장법 위반 사범과 이들의 도주를 도운 범인도피 사범을 수사하여,
 - A사를 무자본 M&A한 다음 허위 공시·보도를 통해 주가를 부양하여 106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고, A사 인수 이후 총 300억 원대 횡령·배임을 저지른 무자본 M&A 사범 4명을 기소(3명 구속 기소)하고,
 - 이들이 허위 공시를 통해 증권사 자금 600억 원을 집행할 수 있도록 금융 구조를 설계한 B증권사 직원 1명을 기소하고,
 -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도주한 무자본 M&A 사범들에게 숙소, 대포폰 등을 제공한 전직 조직폭력배 등 총 3명을 기소하는 등 총 8명을 기소(구속 3명, 불구속 5명)하고, 2명을 기소중지 하였음

1

피고인

- 가○○(54세, 前 A사 부회장, 구속)
- 나○○(51세, 前 A사 대표이사, 구속)
- 다○○(51세, 前 A사 사내이사)
- 라○○(52세, C사 실사주, 구속)
- 마○○(38세, B증권사 TRS운용부서 팀장)
- 바○○(49세, 前 □□파 행동대장)
- 사○○(52세, 유흥주점 운영)
- 아○○(46세, 무직)

2

공소사실 요지

※ 별지 기재와 같음


3

수사 경과

- '20. 8. 금융위원회 긴급조치[FAST TRACK] 요청 접수
- '21. 3. 29. 가○○, 나○○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
 - ※ '21. 3. 31. 영장심문기일에 불출석한 후 도주하여 '21. 4. 14. 각 구속영장 발부
- '21. 5. 28. 가○○, 나○○ 구속
 - ※ 2달간 수심 개의 통화내역·계좌 분석한 끝에 가○○ 차명계좌 접속 IP 확인하고 가○○, 나○○ 동시에 검거하여 구속영장 집행
- '21. 6. 16. 가○○, 나○○ 구속 기소, 다○○ 불구속 기소
- '21. 8. 25. 라○○ 구속
- '21. 9. 10. 라○○ 구속 기소, 마○○ 불구속 기소, 가○○, 나○○ 추가 기소
- '21. 9. 13. 바○○, 사○○, 아○○ 불구속 기소

4

수사의 의의

- 사채자금을 동원하여 건설한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 M&A로 인수하고, 위 사채자금 등을 변제하기 위해 거액의 상장사 자금을 유출시킨 무자본 M&A 사범 일당 및 이들을 도운 대형 증권사 직원을 엄단
- 특히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도주한 무자본 M&A 사범들을 2달간 추적한 끝에 검거하여 자본시장질서 저해 사범들에게 경종을 울린 사안임
- 향후에도 서울남부지검은 금융범죄중점수사청으로서 무자본 M&A 사범을 비롯한 자본시장질서 저해 사범 및 이들을 비호하는 사법질서 침해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임 

별지

순번	피고인 및 직위	주요 공소사실 요지 및 죄명
1	가○○(54세), A사 부회장	<p>(가○○, 나○○, 다○○) '19. 7.경 사채자금으로 A사를 무자본 M&A한 다음, 인수자금 출처, CB·BW 발행 등과 관련하여 허위로 공시하고, 해외 바이오 업체에 거액을 투자할 것처럼 허위로 보도하는 방법으로 주가 부양하여 106억 원 부당이득 취득 [자본시장법위반]</p> <p>(가○○, 나○○) '19. 8.~12.경 A사 인수를 위해 빌린 사채자금을 변제할 목적 등으로 A사 자금 128억 원 횡령, 75억 원 배임 [특경법위반(횡령)·(배임)]</p> <p>(가○○, 나○○, 라○○) '19. 10.경 개인적으로 사용할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, A사 현금·CB 102억 원을 C사에 물품대금 등 명목으로 지급하여 손해를 끼침 [특경법위반(배임)]</p> <p>(가○○, 라○○) '19. 11.~'20. 1. 위와 같이 C사에 지급된 CB 중 77억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 [특경법위반(횡령)]</p>
	나○○(51세), A사 대표이사	
	다○○(51세), A사 사내이사	
	라○○(52세), C사 실사주	
2	마○○(38세), B증권사 TRS운용부서 팀장	'19. 7.경 가○○ 등이 A사를 무자본 M&A할 무렵 실제 220억 원만 융통됨에도 정상적으로 CB·BW를 발행하여 600억 원 상당의 자금을 융통하는 것처럼 공시하는 과정에서,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TRS ¹⁾ 를 활용한 자금 구조를 기획·설계하여 B증권사 자금 600억 원이 집행 [자본시장법위반방조]
3	바○○(49세), 前 □□파 행동대장	<p>(바○○) 구속영장이 청구된 나○○이 도주 중인 사실을 알고도 대포폰을 제공하고 자신 명의로 숙소를 예약할 수 있도록 함 [범인도피]</p> <p>(사○○, 아○○)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○○의 도주를 도운 ■■■이 별건 자본시장법위반 사건 공판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피 중인 사실을 알고도 ■■■에게 숙소, 대포폰, 도피자금을 제공 [범인도피]</p>
	사○○(52세), 유흥주점 운영	
	아○○(46세) 무직	

1) TRS(=Total Return Swap)는 총수익스와프로 계약 당사자가 주식 등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을 상호 교환하는 약정으로, 일반적으로 총수익매도자가 주가 변동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을 매수자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약정 수수료(이자)를 받는 신종파생거래 기법